

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(제3차 교육위원회)
2022. 11. 23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(Wee) 클래스 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현문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2년 11월 8일
- 회부일자: 2022년 11월 8일

3. 제안이유

- 학생상담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·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(Wee)클래스 지원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학생상담과 관련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학생상담 및 위(Wee)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위(Wee)클래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학교상담자 대상 학생상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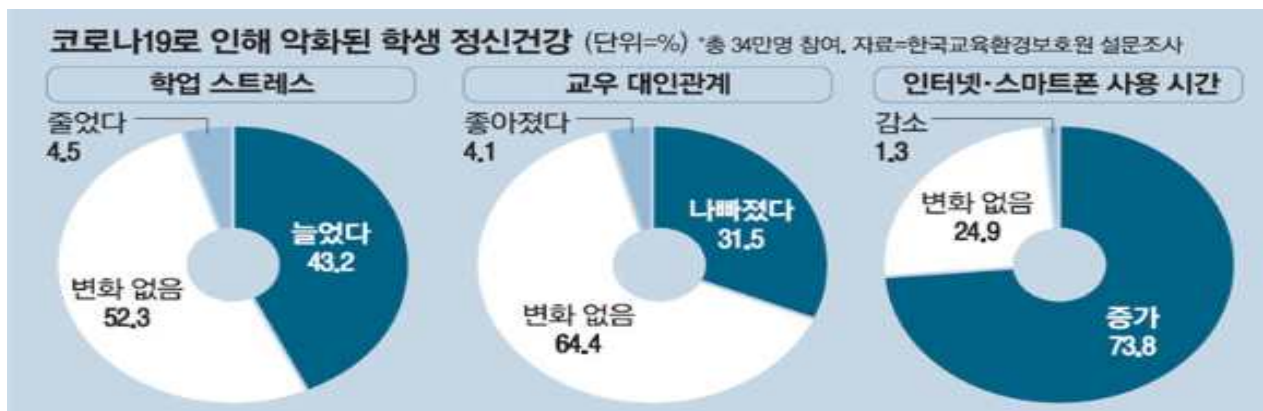
(안 제7조)

○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 이유

○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우울, 불안, 무력감이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¹⁾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.



○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심리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은 학교생활의 적응과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사료됨.

○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성장기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, 위기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임.

1)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지난 2월 초·중·고등학생 총 34만 명을 대상으로 우울·불안, 학업 스트레스, 대인관계, 인터넷·스마트폰 사용, 문제 해결 노력자 등에 대한 자기 인식도 수준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. (매일경제, 22. 4. 14)

○ 특히,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(Wee)클래스 설치·지원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14조¹⁾,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2)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³⁾, 「위(Wee)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3호 4)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법적 근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학생상담 및 위(Wee)클래스 지원계획 수립 시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심리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급 학교 현장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, 학생 상담담당자 교육 지원 및 학생상담 실태조사 시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타 시도 교육청 8곳에서 학생상담 활성화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.

1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(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)

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라 **전문상담교사**를 둔다.

2)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**제15조(상담실 설치)**

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·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인터넷 이용시설,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
2.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

3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.

4) 「위(Wee) 프로젝트 사업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」

제2조(용어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위(Wee) 클래스”란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.

■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

번호	기관	조례명	공포일자
1	경기	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	2021.03.16.
2	대구	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	2021.05.10.
3	전남	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	2021.07.29.
4	세종	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	2021.11.10.
5	인천	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	2021.12.27.
6	부산	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12.29.
7	경북	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	2022.01.03.
8	경남	경상남도교육청 학교상담 활성화 지원 조례	2022.02.03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 ~ 안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,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담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.
- 안 제4조에서는 학생상담 및 위(Wee)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확립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위(Wee)클래스 운영과 학교상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5조에서는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학교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, 학교상담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.

- 안 제6조에서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위(Wee)클래스의 사무 공간과 상담공간 분리 운영과 상담에 필요한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, 그리고 위(Wee)클래스의 비상벨 등 긴급 보호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- 특히, 위(Wee)클래스의 비상벨 등 긴급 보호 장치 설치에 대한 2018년 환자 진료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¹⁾ 이후 상담공간 내 위협상황 발생에 대한 긴급 호출 장치 설치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.

다.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1)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는 환자 진료 중 피해 발생, 진료실 옆문을 통해 복도로 피신하였으나 피의자 흉기에 찔려 사망(2018.12.31)

- 입법예고 의견 접수 관련 -

■ 입법예고 기간 : 2022년 11월 17일 ~ 22일

■ 의견 제출자 :

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
전문상담분과장 안교순, 전문상담분과 유종범

■ 의견 제출일 : 2022년 11월 17일

■ 주요 내용

-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“위(Wee) 클래스”에만 한정되어 현재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전문상담을 포괄할 수 없음.
“위(Wee) 클래스”를 포함한 “위(Wee) 프로젝트” 전반과 함께 “마음건강증진센터”, “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”, “117학교폭력 신고센터” 등 전문적인 상담 영역이 모두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전문상담인력의 배치기준이 명시되어야 객관적인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.

- 의견 제시안 : 제6조(전문상담인력의 배치)

- ① 학교에는 전문상담인력 1인을 배치한다. 다만, 전체 학생수가 100명 이하의 학교에는 (순회)전문상담인력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.
- ② (순회)전문상담인력은 학교급 구분없이 거리,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3개교 이내의 학교에서 제6조에 규정된 전문상담인력의 직무를 수행하며, 그 소속은 순회학교 중 하나로 한다.
-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등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■ 입법예고 처리결과: 미반영

- 미반영 사유 : 발의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함.

■ 입법예고 제시 의견 조치결과

: 입법예고 처리결과를 2022년 11월 22일 의견 제시자에게 통보함.